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3. 용어정의</b> (생략)</p> <p>3-1. “유가보조금”이라 함은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합친 개념을 의미한다.</p> <p>① “유류세연동보조금”이라 함은 에너지 세제개편(2001년)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금전을 말한다.</p> <p>② “유가연동보조금”이라 함은 2008. 6. 8. 정부에서 발표한 『근로자·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』의 일환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유가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금전을 말한다.</p> <p>3-2. ~ 3-4. (생략)</p> <p>3-5. “카드협약사”라 함은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및 여신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정한 <u>신용카드회사</u>를 말한다.</p> <p>3-6 ~ 3-8. (생략)</p>	<p><b>3. 용어정의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3-1. “유가보조금”이라 함은 에너지세제개편(2001년)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금전(유류세연동보조금)을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3-2. ~ 3-4. (현행과 같음)</p> <p>3-5. _____ _____ _____ <u>금융회사</u> _____.</p> <p>3-6 ~ 3-8. (현행과 같음)</p>

<p>4.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(생략)</p> <p>4-1-4-2. (생략)</p> <p>4-3. 거래카드 :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인 주유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, 주유 또는 충전 거래내역만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진 카드</p> <p>4-4. (생략)</p>	<p>4.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(현행과 같음)</p> <p>4-1-4-2. (현행과 같음)</p> <p>4-3. _____ _____ _____ _____을 _____</p> <p>4-4. (현행과 같음)</p>
<p>5. 유류구매카드의 사용</p> <p>5-1. (생략)</p> <p>① (생략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<u>체크·거래카드</u>(유류구매시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주유소와 합의한 시점에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</p> <p>다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5-2. (생략)</p> <p>① 자가주유소만 이용하는 경우 : 카드협약사가 제공하는 RFID 카드(주유내역을 무선으로 인식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) 또는 카드협약사가</p>	<p>5. 유류구매카드의 사용</p> <p>5-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_____ _____ ----- <u>거래·체크카드</u>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5-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_____ ----- <u>인정하는</u> ----- _____ _____ _____</p>

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자체 카드를 사용하여 자가주유 내역이 운수행정시스템 및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별도의 전산망(자가주유 내용 명세서 확인을 위한 전용 웹페이지)을 통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가주유 내용 명세서를 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운송사업자는 자가주유 내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서류신청

\_\_\_\_\_

\_\_\_\_\_

----- 운수행정시스템에

\_\_\_\_\_

\_\_\_\_\_

----- (www.

truckcard.kr)-----

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-----

## 6.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신청

### 6-1. (생략)

- ①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운송사업자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 또는 체크·거래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신청
- ②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나,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운송사업자는 체크카드 또는 체크·거래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신청
- ③ (생략)

### 6-2. (생략)

- ① 법인직영 및 다수차량 보유자 : 화물자동차별로 체크

## 6.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신청

### 6-1. (현행과 같음)

- ① \_\_\_\_\_
- \_\_\_\_\_
- \_\_\_\_\_
- 거래·체크카드
- \_\_\_\_\_
- 
- ② \_\_\_\_\_
- \_\_\_\_\_
- \_\_\_\_\_
- 거래·체크카드-----
- \_\_\_\_\_
- 
- ③ (현행과 같음)

### 6-2. (현행과 같음)

- ① \_\_\_\_\_
- \_\_\_\_\_

카드 또는 체크·거래카드  
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 
선택하여 발급신청하는 것  
을 원칙으로 하되, 운송사업  
자가 요청할 경우 본인이  
직접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 
에 한하여 신용카드 발급신  
청 가능

② (생략)

③ 자가주유소 이용자 : 카드협  
약사가 제공하는 RFID 카  
드 또는 카드협약사가 인정  
하는 운송사업자 자체카드  
사용

## 7.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절차

### 7-1. 신규 발급절차

① 카드 발급신청 (생략)

가. 서류신청 접수 : 카드협약  
사 전국 지점, 우체국(체크  
카드에 한함) 방문 신청

※ 신청서 비치 : 관할관청, 카드  
협약사 전국 지점, 우체국

나. ARS 신청 접수 : 080-800  
-9009

※ 순서 : 1번 → 3번 → 1번 →  
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→  
직장전화번호 입력 → 이동전화  
번호 입력 → 종료

다. 법인직영 및 다수차량 보유  
자의 신청 접수 : 1566-7189

②·③ (생략)

### 7-2. 재발급 절차

① (생략)

----- 거래체크카드

---

---

---

---

---

---

---

---

---

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인정하는 -----  
-----  
-----

## 7.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절차

### 7-1. 신규 발급절차

① 카드 발급신청 (현행과 같음)

가. ----- (별첨 1 참조)

나. ----- (별첨 1 참조)

다. -----  
----- (별첨 1 참조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### 7-2. 재발급 절차

① (현행과 같음)

가. (생략)

나. 신용카드, 체크카드 또는 체크·거래카드로 교체발급(신용카드 → 체크카드, 신용카드 → 체크·거래카드, 체크카드 → 신용카드, 체크·거래카드 → 신용카드)을 하거나 체크카드의 계좌변경을 요청한 경우

다. (생략)

② (생략)

가.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

➔ 카드협약사 상담실로 즉시 신고 (전국 지역번호 없이 1544-7000)하고, 카드 재발급 신청 → 이전 카드 사용정지 → 카드 재발급

※ (생략)

나. 카드의 종류(신용카드, 체크카드, 체크·거래카드) 또는 체크카드의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

➔ (생략)

다. (생략)

③ (생략)

9.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

9-1.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.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\_\_\_\_\_  
거래·체크카드-----  
-(\_\_\_\_\_  
----- 거래·체크  
카드 -----  
-, 거래·체크카드 ----  
\_\_\_\_\_)\_\_\_\_\_  
\_\_\_\_\_

다.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가.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

➔ -----  
(별첨 2 참조)

※ (현행과 같음)

나. \_\_\_\_\_(\_\_\_\_\_, -  
-----, 거래·체크카드) --  
\_\_\_\_\_  
-----

➔ (현행과 같음)

다. (현행과 동일)

③ (현행과 동일)

9.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

9-1.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 
\_\_\_\_\_  
\_\_\_\_\_  
\_\_\_\_\_  
-----.

① ~ ④ (생략)

9-2. 체크·거래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.

① 운송사업자는 유류구매 후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(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)

②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거래카드 사용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산망(거래카드 사용 명세서 확인을 위한 전용 웹페이지)에 해당 자료를 입력

③ ~ ⑤ (생략)

9-3. ~ 9-5. (생략)

9-6. (생략)

① (생략)

② 자가주유내역이 RFID 이용 주유관리시스템(카드협약사가 설치) 및 운송사업자 자체 전산망(카드협약사가 인정)을 통해서 운수행정시스템 및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가주유 내용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산망에 해당 자료를 입력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9-2. 거래체크카드-----  
-----  
-----.

① -----  
-----  
--(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체크카드-----  
-----)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(www.truckcard.kr)  
-----  
--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9-3. ~ 9-5. (현행과 같음)

9-6. (현행과 같음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카드협약사가 인정하는 RFID 이용 주유관리시스템 및 운송사업자 자체 전산망을 통해서 운수행정시스템에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전산망

③ (생략)

가. (생략)

나.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협약사가 별도의 전산망을 통해 제공하는 자가주유 내용 명세서

④ (생략)

**10.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제한**

1일 중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횟수는 2회로 한다.

**11. 행위금지 및 책임**

11-1. (생략)

①·② (생략)

③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

④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([www.truckcard.kr](http://www.truckcard.kr))에

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협약사가 별도의 전산망([www.truckcard.kr](http://www.truckcard.kr))을

----

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**11. 행위금지 및 책임**

11-1. (현행과 같음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 이외의 차량이 ----

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「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」상 불법인 이동 주유소를 이용하거나, 불법유류(면세유,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, 혼합유 등)를 구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

⑥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,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운

⑤ (생략)

11-2. (생략)

12. 기타 사항

12-1. 카드협약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운용 실적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2-2·12-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행정지처분 및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차량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행위

⑦ (현행과 같음)

11-2. (현행과 같음)

12. 기타 사항

12-1. \_\_\_\_\_  
\_\_\_\_\_  
\_\_\_\_\_ 매월  
\_\_\_\_\_.

12-2·12-3. (현행과 같음)

12-4. 카드협약사는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면제하여야 한다.

12-5. 국토해양부 장관은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이나 부정수급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카드협약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, 카드협약사는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(2009. 11. 17.)

1. 이 지침은 2009. 12. 1.부터 시행



한다.

**【별첨 1】**

**유류구매카드 신규 발급 신청방법**

**1. 신한카드**

가. 서류신청 접수 : 카드협약사 전국 지점, 우체국에 방문 신청

※ 신청서 비치 : 카드협약사 전국 지점, 우체국

나. ARS 신청 접수 : 080-800-9009

※ 순서 : 1번 → 3번 → 1번 →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→ 직장전화번호 입력 → 이동전화번호 입력 → 종료

다. 법인직영 및 다수차량 보유자의 신청 접수 : 1566-7189

**2. 국민은행**

가. 서류신청 접수 : 카드협약사 전국 지점

※ 신청서 비치 : 카드협약사 전국 지점

나. 안내전화 접수 : 1599-7900

**3. 우리은행**

가. 서류신청 접수 : 카드협약사 전국 지점

※ 신청서 비치 : 카드협약사 전국 지점, 우체국

【별첨 2】

카드협약사 상담실 연락처

1. 신한카드 : 전국 지역번호 없이 1544-7000
2. 국민은행 : 전국 지역번호 없이 1588-1688
3. 우리은행 : 전국 지역번호 없이 1588-9955